

「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독서문화진흥사업 참가자 및 지원 대상자에게 상품권, 기념품,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책 읽는 문화 형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구체적인 사업명과 대상별 사업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(안 제6조)
- 종전의 한책하나구미운동 사업 종료에 따른 조항 삭제(안 제8조, 안 제10조)
-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문강사 초빙을 위한 조항 신설(안 제8조)
- 사업 참가자 및 지원대상자에게 상품권 등 지급 조항 신설(안 제1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독서문화진흥법」
 - 「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」
-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독서 문화 조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전문강사 초빙, 기념품 제공·포상 등의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,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독서문화진흥사업(북스타트 사업, 북돋움 책선물 사업 등)의 참가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으로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다만, 10여년간 이어온 ‘한책하나구미운동’의 종료와 ‘세대공감구미독서문화사업’의 시행에 따라 집행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독서문화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